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65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중기 투자계획의 오류를 바로 잡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회복시기를 감안하여 수도요금 인상폭과 시행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수도요금표의 업종별 사용요금 단가를 일부 조정함(안 별표 2)
- 조례 시행일 및 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를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1년은 7월 1일부터, 2022년과 2023년은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달 또는 연도의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별표 2 】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원/㎥)				
구 경 (mm)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25	5,200	옥탕용	0~500	400	440	500
32	9,400					
40	16,000		500초과	440		
50	25,00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65	38,900					
75	52,300		300초과	1,04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200	277,000					
250	375,000		300초과	1,04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사 용 요 금</th> </tr>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경 (밀리미터)</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 금 (원)</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 업종</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용구분 (세제곱미터)</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제곱미터당 단가(원)</th> </tr> </thead> <tbody> <tr> <td>15</td><td>1,08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가정 용</td><td>0~30이하</td><td>360</td></tr> <tr> <td>20</td><td>3,000</td><td>30초과~50이하</td><td>550</td></tr> <tr> <td>25</td><td>5,200</td><td>50초과</td><td>790</td></tr> <tr> <td>32</td><td>9,4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육탕 용</td><td>0~50이하</td><td>360</td></tr> <tr> <td>40</td><td>16,000</td><td>50초과~2,000이하</td><td>420</td></tr> <tr> <td>50</td><td>25,000</td><td>2,000초과</td><td>560</td></tr> <tr> <td>65</td><td>38,9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공공 용</td><td>0~50이하</td><td>570</td></tr> <tr> <td>75</td><td>52,300</td><td>50초과~300이하</td><td>730</td></tr> <tr> <td>100</td><td>89,000</td><td>300초과</td><td>830</td></tr> <tr> <td>125</td><td>143,0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용</td><td>0~50이하</td><td>800</td></tr> <tr> <td>150</td><td>195,000</td><td>50초과~300이하</td><td>950</td></tr> <tr> <td>200</td><td>277,000</td><td>300초과</td><td>1,260</td></tr> <tr> <td>250</td><td>375,000</td><td></td><td></td><td></td></tr> <tr> <td>300</td><td>465,000</td><td></td><td></td><td></td></tr> <tr> <td>350</td><td>565,000</td><td></td><td></td><td></td></tr> <tr> <td>400이상</td><td>615,000</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 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육탕 용	0~50이하	360	40	16,000	50초과~2,000이하	420	50	25,000	2,000초과	560	65	38,900	공공 용	0~50이하	570	75	52,300	50초과~300이하	730	100	89,000	300초과	830	125	143,000	일반 용	0~50이하	800	150	195,000	50초과~300이하	950	200	277,000	300초과	1,26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p>[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사 용 요 금</th> </tr>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경 (밀리미터)</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 금 (원)</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 업종</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용구분 (㎡)</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적용연도</th> </tr> <tr> <th>2021 년</th> <th>2022 년</th> <th>2023 년부터</th> </tr> </thead> <tbody> <tr> <td>15</td><td>1,08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가정 용</td><td>구분 없음</td><td>430</td><td>500</td><td>580</td></tr> <tr> <td>20</td><td>3,0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육탕 용</td><td>0~500</td><td>490</td><td></td><td></td></tr> <tr> <td>25</td><td>5,200</td><td>500초과</td><td>510</td><td>570</td><td>620</td></tr> <tr> <td>32</td><td>9,4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공공 용</td><td>0~300</td><td>920</td><td></td><td></td></tr> <tr> <td>40</td><td>16,000</td><td>300초과</td><td>1,040</td><td></td><td></td></tr> <tr> <td>50</td><td>25,000</td><td>0~300</td><td>1,020</td><td></td><td></td></tr> <tr> <td>65</td><td>38,9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용</td><td>300초과</td><td>1,150</td><td>1,160</td><td>1,270</td></tr> <tr> <td>75</td><td>52,300</td><td>400이상</td><td>615,000</td><td></td><td></td></tr> <tr> <td>100</td><td>89,000</td><td></td><td></td><td></td><td></td></tr> <tr> <td>125</td><td>143,000</td><td></td><td></td><td></td><td></td></tr> <tr> <td>150</td><td>195,000</td><td></td><td></td><td></td><td></td></tr> <tr> <td>200</td><td>277,000</td><td></td><td></td><td></td><td></td></tr> <tr> <td>250</td><td>375,000</td><td></td><td></td><td></td><td></td></tr> <tr> <td>300</td><td>465,000</td><td></td><td></td><td></td><td></td></tr> <tr> <td>350</td><td>565,000</td><td></td><td></td><td></td><td></td></tr> <tr> <td>400이상</td><td>615,000</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연도			2021 년	2022 년	2023 년부터	15	1,080	가정 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20	3,000	육탕 용	0~500	490			25	5,200	500초과	510	570	620	32	9,400	공공 용	0~300	920			40	16,000	300초과	1,040			50	25,000	0~300	1,020			65	38,900	일반 용	300초과	1,150	1,160	1,270	75	52,300	400이상	615,0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p>[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사 용 요 금</th> </tr>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경 (밀리미터)</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요 금 (원)</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 업종</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용구분 (㎡)</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적용연도</th> </tr> <tr> <th>2021 년</th> <th>2022 년</th> <th>2023 년부터</th> </tr> </thead> <tbody> <tr> <td>15</td><td>1,08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가정 용</td><td>구분 없음</td><td>390</td><td>480</td><td>580</td></tr> <tr> <td>20</td><td>3,0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육탕 용</td><td>0~500</td><td>400</td><td></td><td></td></tr> <tr> <td>25</td><td>5,200</td><td>500초과</td><td>440</td><td>440</td><td>500</td></tr> <tr> <td>32</td><td>9,4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공공 용</td><td>0~300</td><td>920</td><td></td><td></td></tr> <tr> <td>40</td><td>16,000</td><td>300초과</td><td>1,040</td><td></td><td></td></tr> <tr> <td>50</td><td>25,000</td><td>0~300</td><td>980</td><td></td><td></td></tr> <tr> <td>65</td><td>38,900</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용</td><td>300초과</td><td>1,040</td><td>1,150</td><td>1,270</td></tr> <tr> <td>75</td><td>52,300</td><td>400이상</td><td>615,000</td><td></td><td></td></tr> <tr> <td>100</td><td>89,000</td><td></td><td></td><td></td><td></td></tr> <tr> <td>125</td><td>143,000</td><td></td><td></td><td></td><td></td></tr> <tr> <td>150</td><td>195,000</td><td></td><td></td><td></td><td></td></tr> <tr> <td>200</td><td>277,000</td><td></td><td></td><td></td><td></td></tr> <tr> <td>250</td><td>375,000</td><td></td><td></td><td></td><td></td></tr> <tr> <td>300</td><td>465,000</td><td></td><td></td><td></td><td></td></tr> <tr> <td>350</td><td>565,000</td><td></td><td></td><td></td><td></td></tr> <tr> <td>400이상</td><td>615,000</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연도			2021 년	2022 년	2023 년부터	15	1,080	가정 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육탕 용	0~500	400			25	5,200	500초과	440	440	500	32	9,400	공공 용	0~300	920			40	16,000	300초과	1,040			50	25,000	0~300	980			65	38,900	일반 용	300초과	1,040	1,150	1,270	75	52,300	400이상	615,0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 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육탕 용	0~50이하	360																																																																																																																																																																																																																																																																																																																										
40	16,000		50초과~2,000이하	420																																																																																																																																																																																																																																																																																																																										
50	25,000		2,000초과	560																																																																																																																																																																																																																																																																																																																										
65	38,900	공공 용	0~50이하	570																																																																																																																																																																																																																																																																																																																										
75	52,300		50초과~300이하	730																																																																																																																																																																																																																																																																																																																										
100	89,000		300초과	830																																																																																																																																																																																																																																																																																																																										
125	143,000	일반 용	0~50이하	800																																																																																																																																																																																																																																																																																																																										
150	195,000		50초과~300이하	950																																																																																																																																																																																																																																																																																																																										
200	277,000		300초과	1,26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연도																																																																																																																																																																																																																																																																																																																										
				2021 년	2022 년	2023 년부터																																																																																																																																																																																																																																																																																																																								
15	1,080	가정 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20	3,000		육탕 용	0~500	490																																																																																																																																																																																																																																																																																																																									
25	5,200			500초과	510	570	620																																																																																																																																																																																																																																																																																																																							
32	9,400	공공 용		0~300	920																																																																																																																																																																																																																																																																																																																									
40	16,000		300초과	1,040																																																																																																																																																																																																																																																																																																																										
50	25,000		0~300	1,020																																																																																																																																																																																																																																																																																																																										
65	38,900	일반 용	300초과	1,150	1,160	1,270																																																																																																																																																																																																																																																																																																																								
75	52,300		400이상	615,0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적용연도																																																																																																																																																																																																																																																																																																																										
				2021 년	2022 년	2023 년부터																																																																																																																																																																																																																																																																																																																								
15	1,080	가정 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육탕 용	0~500	400																																																																																																																																																																																																																																																																																																																									
25	5,200			500초과	440	440	500																																																																																																																																																																																																																																																																																																																							
32	9,400	공공 용		0~300	920																																																																																																																																																																																																																																																																																																																									
40	16,000		300초과	1,040																																																																																																																																																																																																																																																																																																																										
50	25,000		0~300	980																																																																																																																																																																																																																																																																																																																										
65	38,900	일반 용	300초과	1,040	1,150	1,270																																																																																																																																																																																																																																																																																																																								
75	52,300		400이상	615,0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p>※ 사용량 적용</p> <p>1. 사용요금은 매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연도의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p>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표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1년은 7월 1일부터, 2022년과 2023년은 1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적용일 전날이 속한 달 또는 연도의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급수업종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공용으로 분류되었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량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 별표 1 】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주거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다만,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일반용	가.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 나.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 급수 다.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 라.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 마.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사. 학교(유치원 포함) 아. 정당 자. 병영 차. 신문사, 방송국 카.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타.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 파.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하.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거.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너.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

【 별표 2 】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원/㎥)				
구 경 (mm)	요 금 (원)	업종 구분	사용구분 (m ³)	적용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20	3,000					
25	5,200					
32	9,400	육탕용	0~500	400	440	500
40	16,000		500초과	440		
50	25,000					
65	38,90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75	52,3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업종별</th> <th style="width: 90%;">구 분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정용</td> <td>가. ~ 아. (생 략)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단, 오피스텔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욕탕용</td> <td>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용</td> <td>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 (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 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 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td> </tr> </tbody> </table>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 아. (생 략)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단, 오피스텔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 (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 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 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p>[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업종별</th> <th style="width: 90%;">구 분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정용</td> <td>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다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욕탕용</td> <td>가. ----- (다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용</td> <td><삭 제></td> </tr> </tbody> </table>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다만, -----)	욕탕용	가. ----- (다만, -----)	공공용	<삭 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 아. (생 략)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단, 오피스텔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 (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 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 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다만, -----)																
욕탕용	가. ----- (다만, -----)																
공공용	<삭 제>																

<p>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p> <p>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p> <p>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일반용 <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삭 제></p> <p>가. -----경우로 한정)</p> <p>나. ----- -- 운반급수</p> <p>다.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p> <p>라.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p> <p>마.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p> <p>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p> <p>사. 학교(유치원 포함)</p> <p>아. 정당</p> <p>자. 병영</p> <p>차. 신문사, 방송국</p> <p>카.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p> <p>타.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p> <p>파.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p> <p>하.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p> <p>거.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p> <p>너.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p> <p>일반용</p>
<p>[별표 2]</p>	<p>[별표 2]</p>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육탕용	0~500이하	360
40	16,000		500초과~2,000이하	420
50	25,000		2,000초과	560
65	38,900		공공용	0~50이하
75	52,300	50초과~300이하		730
100	89,000	300초과		830
125	143,000	일반용		0~50이하
150	195,000		50초과~300이하	950
200	277,000		300초과	1,260
250	375,000		일반용	0~50이하
300	465,000	50초과~300이하		950
350	565,000	300초과		1,260
400이상	615,000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원/m)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m)	적용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15	1,080	가정용	구분 없 표	390	480	5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육탕용	0~500	40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50	25,000		500초과	440		
65	38,900		440	500		
75	52,300					
100	89,00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125	143,000					
150	195,000		300초과	1,04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300	465,000					
350	565,000		300초과	1,040		
400이상	615,000					